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6,000,000	14,580,000
일반회계	422,000,000	12,660,000
특별회계	64,000,000	1,920,000
기타특별회계	64,000,000	1,920,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34,000	25,02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44,000	10,3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835,000	175,0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	6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8,468,000	854,0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13,000	3,390
치수사업특별회계	2,619,000	78,5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99,000	179,9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768,000	593,0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368,813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내부유보금은 6,643,03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